

韓國環境政策과 展望

金 政 炫

환경청

(1979년 10월 30일 수리)

Korean Environmental Policy and Prospects

Jung Hyun Kim

Office of Environment, Seoul, Korea

(Received October 30, 1979)

1. 序 論

環境污染은 인간의 生活活動에 의해서 生成되는 것으로써 地域社會의 罪過를 招來하는 性格을 갖는다.

人間의 生活活動中에서도 產業活動은 經濟의 高度成長을 갖어온에 따라 매우 활발한 狀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副作用으로서도 또한 複雜적 결과로서 環境污染에 의한被害가 多數發生하고 環境파괴도 起起시키고 있다.

따라서 經濟成長 政策과 環境保全政策 사이에는 항상 平衡을 이루고 推進이 되어야만 適正한 環境을 保全할수 있으며, 그러한 平衡이 維持되지 않는 경우에는 複雜로 소위 公害라고 하는 現象이 발생하는 結果가 된다.

兩者가 相殺效果를 갖는 程度로 강력한 政策을 取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調和를 提唱한다고 하더라도 꼭 兩者間의 優劣의 차가 불기 마련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類例에서 벗어나지 않고 先進工業國과 같이 成長 政策에 비중을 더해 왔다고 하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工業化 政策을 통해서 經濟成長을 追求하고 있기 때문에 先進工業國에서 볼 수 있었던 公害現象이 1962~1966의 第1次 經濟開發 計劃中에서 부터 진행되고 第2次 經濟開發 計劃中에는 더욱 進展되고 第3次 經濟開發 計劃中에는 本格

化되고 第4次 經濟開發 計劃中인 지금에는 이 以上 더 放任할 수 없는 段階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不充分하고 不完全했던 公害防止法을 全面 改編하여 11章 70條 附則 4條로 된 環境保全法을 지난 77年 12月 31日字로 새로 制定하게 되었다.

環境保全法의 法的 性格은 環境保全이라는 綜合의 성격을 띠우게 되었고 轉換된 표식은 環境基準 環境影響評價 總量規制 水系 및 大氣影響圈別 관리와 污染被害에 대한 無過失 責任등 새로운 制度가 도입되어 앞으로는 廣域 管理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環境保全에 대한 正確한 方向 提示가 되는 것으로 본다.

2. 規制方法 및 手段

(가) 環境基準에 의한 規制

지금까지 污染防止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온 方式은 污染源의 排出程度 만을 고려하는 排出基準에 의한 規制였다.

그러나 環境속의 污染物質은 무수한 發生源으로부터 排出된 污染의 總和로서 現存한다.

따라서 環境의 污染은 發生源의 數와 規模에 의하여 크게 左右된다.

工業地帶나 도시지역에서의 污染現象에서 쉽게 볼수 있듯이 비록 일정한 排出基準의 준수가 確保된다 할지라도 環境容量은 污染物質의 收容能力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容量을 超過하는 경우에

는 自淨能力을 상실케 되므로 無數한 汚染源으로
부터의 汚染이 集積되면 人體나 환경에 두려운 結果를 超來하게 된다.

結局 個個의 汚染源에 대한 排出基準에 의한 規制만으로서는 사람의 健康保護나 期待되는 環境條件은 確保 할 수 없다.

여기 환경상의 條件으로서 사람의 健康을 保護하고 生活環境을 保存하기 위하여 유지될 것이 要請되는 基準을 정하여야 할 必要性이 強調되고 또한 行政的으로도 어떠한 수준까지 達成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面에서 일단은 行政目標로서 「環境基準」이라는 目標를 정하고 目標達成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推進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環境基準」에 의한 規制가 環境保全法에서의 새로운 方式으로 登場하게 된다.

(나) 特別對策地域의 指定

人口 및 產業의 集中으로 環境汚染이 현저한 地域을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하여 集中的이고도 綜合的인 汚染規制를 하게하고 있다.

이 地域內에서는 汚染物質의 總量規制 環境改善을 위한 土地利用 施設設置의 制限을 할 수 있다.

(다) 濃度規制와 總量規制

排出許容基準은 環境保全法上 主要한 汚染防止手段中의 하나이다.

排出許容基準은 一定 水準이상의 汚染排出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며 普通 排出口 혹은 被害地點에 있어서의 排出物質의 농도를 그 척도로 하여 設定된다.

따라서 농도規制方式은 排出物質의 농도만이 문제될 뿐이지 그 總量에 관하여는 配慮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濃度規制方式은 汚染源의 數와 規模가 增大함에 따라 많은 汚染物質이 環境속에 蕊積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再檢討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설후 設定된 농도에 의한 規制基準이 完全히 이행되더라도 汚染物質의 축적에 의한 汚染은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지역의 大氣 河川의 自淨作用 氣象 地形등을 調査하고 그 汚染限度量을 算出하여 이를 기초로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등에 대하여 有害物質의 排出量을 割當하는 方式, 即 總量規制 方式이 채택되어야 한다.

環境保全法은 特別對策지역에 한하여 大氣 水質 汚染防止를 위하여 總量規制方式을 채택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採擇

환경문제에 적절히 對處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汚染物質의 排出抑制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경파괴를 事前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환경이란 無限하거나 무진장한 것이 아니며 만약 이를 부질체하게 開發利用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환경은 回復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급기야는 우리의 生存까지도 威脅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의 開發利用에 있어 그 파괴를 事前에 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가장 그 파괴의 可能性이 적은 方法을 택하도록 하는 制度의 方案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副應하여 최근 美國, 西獨, 스웨덴 등 諸國에서는 환경영 향평가제도가 考案채택되어 環境保全對策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우리 환경보전법도 이러한 要請과 추세에 쫓아 환경영 향평가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制度는 技術的으로나 行政的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高度의 전문적인 環境管理技術이므로 그 實効性있는 成果를 거두기 위하여는 단계적인 適用擴大가 바람직 하다.

(마) 大氣 및 水質의 영 향권별管理

環境保全法上의 환경보전대책의一般的行政관할은 보건사회부장관에 속하나 具體적으로는 當該 지역을 관할하는 市·道知事 혹은 다른 關係部處가 當該지역 또는 水質에 관한 汚染방지 내지 管理를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數個의 行政管轄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地形 氣象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大氣汚染의 한 영 향권내에 속하거나 혹은 河川 호소가 역시 數個의 行政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 大氣汚染 및 水質汚染의 規制管理를 行政管轄區域에 따라 區分하여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非效率의이다.

따라서 環境保全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大氣 水質汚染의 規制내지 大氣 水質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行政관할區域에 불구하고 大氣汚染의 영 향권별 그리고 水質의 水系別 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바) 排出施設의 設置規制

排出施設을 설치 또는 变경하고자 하는者에 대하여 그 設置 또는 变경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許可를 받게 함으로서 事前의 汚染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排出施設의 設置許可是 한편 規制對象이 되는 배출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동시에 배출시설 또는 汚染物質排出방지시설이 法定要件에 적합하는지 그 여부의 審查를 확보케 해준다.

따라서 許可事項이 審查結果 不適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當該施設의 구조나 污染物質排出방지시설에 관한 計劃 變更등을 통하여 이를 補正케 함으로써 事前의 오염방지를 확보케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許可받은 事業者가 當該施設을 설치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檢查를 받도록 하여 檢查結果에서 適合判定을 얻지 못하는 한 그施設의 積動을 금지시키고 또한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그 許可와 檢查를 반복 함으로써 설치규제를 통한 事前의 污染방지의 확보를 기하고 있다.

(사) 土地利用 施設設置의 規制

公害방지법에서는 土地利用規制는 國土利用管理法 도시계획법 建築法등에 의한 用途地域規制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환경보전법에서는 特別對策地域內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역내의 土地利用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排出規制 만으로서는 환경오염의 防止 내지 환경보전을 도모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人口 및 產業의 集中으로 환경오염이 특히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大都市나 工業地帶에 있어서는 工業地와 住宅地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都市에의 工場集中을 억제 하는등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있는 환경대책을 推進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同法은 넓은 의미에서의 도시計劃 내지 도시개조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아) 規制確保의 手段

規制立法에서 아무리 훌륭한 규제수단들이 채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들手段들이 만족스럽게 그 기능을 다하여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手段들의 施行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公害防止法에서는 허가받은 事業場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許可없는 排出施設에 관하여는 처벌만을 정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환경보전법은 이兩者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許可를 받아 操業中인 事業場의 오염물질의 排

出程度가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汚染物質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代替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操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急迫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改善命令을 거칠없이 즉시 操業의 제한이나 정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개선명령을 하여도 當該 事業場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환경보전법은 그 以外에도 規制確保를 위하여 치벌과 설치허가의 취소라는 강력한 手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처벌에 관하여는 公害防止法上 最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던 것을大幅 강화하여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하고 있다.

그리고 事業者가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혹은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正常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操業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同法則附 第3條에 의한 6個月間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다.

(자) 私法的 救濟手段

私法的 救濟는 간접적으로는 환경규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환경보전법은 그 法的性格의 전환과 함께 새로이 被害배상에 관한 규정을 設定하였다.

사람의 生命 身體에 대한 오염피해에 관하여는 事業者에 無過失賠償責任을 지었으며 2個以上的 事業場으로부터 排出된 污染物質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그 原因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事業者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特別對策地域內에서 特定 有害物質에 의하여 土壤 水域이 오염되어 농수산물의 재배 제한조치를 한 경우 이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当該 유해물질 배출자가 無過失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汚染別 規制手段

(가) 大氣汚染의 規制手段

① 燃料使用의 規制

배출시설이 적정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및 성질에 관하여直接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大氣汚染을 감소시킬 수 있다.

環境保全法도 大氣汚染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場에 대하여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變更을 명할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② 惡臭發生物의 소각금지

적정한 소각시설 없이 고무, 피혁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惡臭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쾌감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保全法은 일정한 지역에서는 適合한 소각시설 없이는 고무 피혁 合成樹脂 또는 廢油 등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③ 自動車 排氣ガス의 規制

자동차 배기ガス가 도시의 大氣汚染에 미치는 정도에 있어 美國이 60%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30%는 근소한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같은 量的比較는 자동차 배기ガス中 질소산화물(NOX), 一酸化炭素(CO)와 같이 黃酸化物(SOX)보다 훨씬 有毒한 위해를 가져온다는點을 看過한 것이다.

환경보전법은 이와는 달리 自動車 排氣ガス를 総合的に 規制하고 있다.

即, 排出ガ스의 허용기준, 자동차의 운행통제,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濃度, 자동차燃料添加劑의 규제등 네가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④ 自動車, 重機排出ガ스의 許容基準

보건사회부장관은 자동차 및 重機로 부터 大氣中에 배출되는 가스, 特に 배출허용기준을 자동차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에 관한 細部事項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交通部長官이 그리고 重機의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이 정하도록 하여 그 規制措置는 교통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이 각각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⑤ 自動車通行의 統制

자동차배출ガ스로 인한 大氣오염이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기상조건, 도로의 事情, 자동차의 수등과 관련하여 건강에 重大한 위해를 줄 정도로 되면

자동차의 通行自體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보전법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道知事로 하여금 위와같은 事態가 發生하였을 때는 당해지역에서의 자동차통행을 통제할수 있게 하고 있다.

⑥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농도 자동차배기ガ스의 규제는 자동차의 生産手段에서부터 확보되지 않으면 그 效率성이 滅殺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제작시에 그 排出ガ스의 濃度基準에 적합하도록 제작할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이 要請은 자동차의 輸入時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⑦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규제

자동차 배출ガ스에 의한 汚染은 使用하는 연료나 기계의 不完全에서 뿐만 아니라 연소촉진등을 위하여 연료에 첨가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보전법은 연료의 添加劑로 인하여 인체에 危害하게 有害한 物質이 배출될 때에는 그 첨가제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나) 驚音 振動의 規制手段

① 驚音 振動規制地域의 指定

住民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음, 진동을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地域內에서 적용되는 소음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特定工事에 관하여 규제할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소음(및 진동) 규제기준의 설정

住民의 생활환경을 保全하기 위하여 소음(및 진동) 규제지역으로 指定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當該地域에 대한 소음규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驚音規制基準은 소음규제지역에서만 適用되는데 반하여 소음배출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相異하다.

③ 特定工事의 申告 및措置

소음규제지역내에서 특정 공사를 施行하고자 하는者は 관할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當該市·道知事は 特定工事로 인한 소음이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作業時間의 조정, 방지시설의 설치등을 명할수 있다.

(다) 水質 및 土壤污染의 規制

① 水質污染의 規制

② 投棄 및 毀損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公共水域에 特定有害

物質, 產業廢棄物을 버리는 행위, 동물의 死體, 糞尿, 塵芥 또는 汚泥등을 버리는 행위,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시설물을破損하는 행위를 할수 없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河川法, 汚物清掃法, 開港秩序法, 港灣法등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水質汚染의 원인이되는 諸行爲의 금지, 제한을 總括하여 规定하는 것이다.

⑥ 公共水域의 占用 埋立에 依한 汚染禁止
海岸, 河川, 湖沼등의 公共水域을 占用, 埋立함과 관련하여 水質汚染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許多한 點에 비추어 이러한 公共水域의 占用, 埋立의 허가, 認可를 해주는 주무관청은 당해 許可, 認可에 公共水域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條件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⑦ 下水, 糞尿 終末處理場의 維持管理
地方自治團體가 設置, 運用하는 下水處理場, 糞尿 終末處理場이 公共水域의 汚染에 미치는 영향이至大한 點을 감안하여 이를 귀제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處理後에 放流水의 水質基準에 適合할것을 要求하고 있다.

⑧ 水產物의 栽培制限
특별대책지역내의 水域이 特定有害物質로 汚染된 경우 당해 水域에서의 水產物의 재배를 制限함으로써 保健上의 危害를 防止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⑨ 土壤汚染의 規制
⑩ 投棄등의 禁止
土壤汚染의 原因이 될 수 있는 特定有害物質 產業廢棄物등을 山林에 投棄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⑪ 農耕地의 汚染防止
特別對策地域내에 있어서는 特定有害物質에 의한 농경지 草地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은 당해 농경, 草地에流入하는 用水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覆土, 削土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⑫ 農產物의 재배제한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어 토양이 特定유해물질에 依하여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土地所有者에 대하여 農作物의 재배를 제한 함으로서 오염된 農작물에 依한 보건상의 위험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費用負擔

환경보전법은 세로이 事業者의 環境汚染防止事

業費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다.

즉 事業者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防止하기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對施하는 사업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一部를 負擔할 의무가 있음을 明定함으로써 이른바 廣義의 原因者負擔原則을 宣言하고 있다.

그리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費用負擔計劃을 수립, 決定하여야 하며 그 實施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할 부담금의額數는 各 事業자의 사업활동의 종류, 규모,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基準으로 하여 부담총액을配分하여 決定도록 하고 있다.

이 事業者の 費用負擔을 公平負擔의 原則에 입각하여 課하는 公法上의 부담으로서 廣義의 原因者 부담으로 이해 되지만 懲罰的 의미를 가지는 賦課金制度의 排出賦課金과는 구별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그 운용에 있어 남용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오염방지사업비를 企業으로부터 확보하려는 制度로서의 인상을 주기 쉽다.

5. 汚染防止施設業 產業廢棄物處理의 規制

污染防治施設의 설치와 汚染防止器機의 제조를 業으로 하는 著를 적절히 감독 규제함은 오염防止의 目的達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환경보전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세로이 設定하였다.

그리고 폐기물 특히 산업폐기물은 그 處理方法에 따라 大氣, 水質, 土壤汚染의 惡化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따라서 산업폐기물의 처리 혹은 그 처리를 業으로 하는 著를 엄격히 규제 감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환경보전법도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6. 被害救濟

오염문제가 多樣化, 심각화함에 따라 그 被害도擴大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따라서 환경보전법도 그 被害救濟의 확보를 위하여 紛爭調整制度를 擴充 補完함과 동시에 生命, 身體에 대한 오염피해에 관하여는 無過失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의 조정제도가 任意的 調停이라는 點에서 그 實效性은 全혀 의문시되며 또한 무과실

배상책임에 관하여 財產被害를 그 대상에서 除外한 것은 不當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判例가 과실에 관하여 이미豫見可能說을 취함으로써 오염피해 전반에 관하여 무과실 배상책임을 인정한것과 다름없다는點에서 본다면 위 규정의 신설은 큰 意味가 없다.

차라리 特定有害物質에 의한 生命 身體에 대한 피해에 관하여는 가장 난점이 되고 있는 因果關係의 立證 責任을 加害者에 전환시켰으면 피해구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7. 對策機構

美國의 環境保護處(EPA)나 日本의 환경청과 같은 환경행정을 爲한 獨立의 총괄적 기구는 없으며 우리의一般的 中央行政機構는 보건사회부이며一般的的地方行政機構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道이다.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그리고 道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기 할만한 것은 환경보전에 必要한 시험, 조사연구, 기술개발, 자료분석 및 要員의 훈련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연구기관의 설치를 明文化 한 點이다.

8. 環境保全法施行上의 問題點

(가) 환경관계기술교육의 개발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은 환경파괴 내지 오염의 과학기술보다 그 개발기술이 앞서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환경보전대책의 成功的인 推進을 위하여는 汚染除去防止技術의 개발, 조사연구, 자료분석 및 專門要員의 훈련을 위한 體制가 정비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환경보전법은 환경연구기관의 설치를의무화하여 그러한 과학기술의 도입과 개발로 기술축적에 힘써야 한다.

(나) 政府의 姿勢 및 行政能力

환경보전법에 나타난 환경대책에 대한 자세는 이제는 적극적이고도 綜合的이다. 그러나 이 姿勢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微溫的인 경제개발 우선적이었던 政策의 전환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綜合的 자세로의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환경보전을 위한 規制業務는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建設部, 交通部, 農水產部, 商工部 등에서 固有業務와 관련하여 生成되는 副產物을相互協力下에 遂行되어야 한다.

이들 관계부처간의 有機的인 協力關係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대책의 成功的인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다) 財政的 基盤의 造成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國債수단이 아우디 擴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成功的인 施行을 위하여는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財政的 기반조성이 그 不可缺한 전제가 된다.

(라) 汚染實態의 기초조사

환경기준 특별대책지역등 새로운 制度들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全國的인 汚染實態가 이미 조사되어 그 資料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마) 國民의 環境意識

一般國民들의 환경의식여하가 결국 환경대책成敗의 관건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國民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환경오염에 대한 被害意識의 확립없이는 환경보전대책의 成功的인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日本과 같은 무서운 公害病의 경험이 없고 經濟成長에 가치를 偏重해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환경오염의 被害의식 조차도 철저하지 못한 實情이다.

따라서 여기에 環境保全法의 實效性있는 施行은 國民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爲하여 國民 스스로의 적극적인 參與가 成敗를 판가름 한다.